〈논　문〉

韓國 靑少年의 法意識에 관한 調査硏究*

李　壽　成**

I. 序　論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있어 靑少年들의 法, 犯罪 및 刑罰에 대한 態度를 調査分析함으로써 靑少年들의 法意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調査結果를 分析하기에 앞서 그 기초작업으로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基本槪念 및 問題意識을 밝히고자 한다.

대체로 法意識이라 함은 현저하게 法的인 現象(distinctively legal phenomena)에 대한 認知的(cognitive), 評價的(evaluative) 및 感情的(emotional)인 心理狀況을 총칭하는 槪念으로 이해되고 있다(1). 즉 法的 認識, 法的 判斷 내지 評價, 그리고 法感情을 의미한다. 여기서 法的 認識은 法制度에 관한 知識(knowledge)을 의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法規範, 法制度를 行爲決定의 좌표로서 認知하는 것도 포함한다. 法的인 判斷 내지 評價는 法現象에 대하여 내리는 일정한 價値判斷 및 그 判斷의 기준을 말한다. 그리고 法感情이란 행위자가 法現象에 대하여 가지는 情緖的 態度를 지정하는 것으로 다분히 非合理的, 非論理的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法感情을 法意識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다. 兩者를 구별하려는 입장에 의하면, 法의 心理的 現象形態에 있어 認知的 要素가 지배할 경우에는 法意識이라 하고, 認知的 要素가 法情緖的 要素의 뒷전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法感情이라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法意識에 있어서는 合理的 精神現象이 지배적이고, 法感情의 경우에는 非合理的 精神現象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2).

그러나 兩者는 실제에 있어서는 극히 긴밀한 相互依存的 關係를 이루고 있다. 즉 法感情은 자기의 抽象的 內容을 法意識의 힘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法意識은 자신의 의존기초를 法感情에 두고 있다. 이리하여 法意識의 形成過程에는 매순간 法感情의 작용이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의 法觀念 속에는 양자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靑少年들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法意識이라 할

*이 論文은 文敎部 學術硏究助成費에 의한 硏究論文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法意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Philip Selznick, "The Sociology of law",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an, 1968); Adam Podgórecki, *Law and Society* (Routledge & Kegan Paul, 1974)에 힘입은 바 크다.

(2) M. Rhebinder (崔 鍾庫外譯), 法社會學, 法文社, p. 171.

때는 認識, 評價 및 情緖, 感情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法意識을 논의할 때의 法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個別的인 法規에 대하여 그에 相應하는 法意識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오늘날 法資料의 증가는 모든 法規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며, 그 때문에 一般人들은 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아무런 입장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規範受領者는 대체로 간략화된 형식의 法的 行爲指示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法意識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에 있어 法은 實定法規(legal regulation)라기보다는 오히려 法原理(legal principle)를 의미하게 될 것이며[3], 조사내용은 대체로 法과 正義에 대한 一般常識, 司法制度와 當局에 대한 態度, 法의 威信(prestige of the law) 내지 法에 대한 情緖的 態度 등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한 나라의 法秩序는 法制度와 法意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국민의 法意識은 법의 形成 및 執行을 큰 테두리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의 法意識은 法制度가 작용하기 위한 배경 내지 與件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法意識을 고찰하는 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意義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民主社會에 있어서는 法에 대한 올바른 輿論造成이 法生活의 條件이며 둘째, 일단 형성된 法意識은 立法과 司法의 統制能力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法을 통한 社會統制는 制裁(sanction)의 위협과 집행만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그보다 規範의 사회적인 正當化(legitimation)와 服從者에 의한 內面化(internalization)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强制手段은 일반적으로 規範준수가 아니라 規範의 强制的 賦課(imposition)를 결과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法規範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社會秩序를 확보할 수 없다. 法이 사회 내에서 規範性을 획득하지 못하고 强制力에만 의지할 경우 受範者는 소극적으로는 法을 회피할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法違反行爲를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결국 法의 妥當性 및 有效性은 受範者의 法意識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目的은 青少年集團의 下位文化(subculture)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法的 價値 및 規範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경험적 調査硏究를 통하여 밝혀내고자 함에 있다. 青少年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下位文化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規範定向을 얻는데, 이는 종종 公式的 規範定向과 대립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硏究에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인간 발달단계에서 青少年의 시기는 情緖的 不安感과 價値觀의 급격한 변화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規範意識은 형성, 변화해가며 그러는 가운데 종종 役割 및 價値의 混迷로 인하여 無規範的 狀態(anomie)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 法規範 내지 規範合致的 意識에 관하여 青少年들은 어떠한 認知的, 評價的, 情緖的 態度를 가지고 있는가? 法意識에 관하여 青少年 集團은 사회 일반인들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3) Podgórecki, *op. cit.*, pp. 91-92.

나아가 각 青少年集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 및 그를 야기시킨 要因(factor)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규명하는 작업은 우리의 法社會學的 硏究의 한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青少年들의 法意識을 알아볼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의 青少年犯罪(非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명백해진다. 青少年犯罪는 量的인 증가현상과 더불어 質的으로도 集團化, 凶暴化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이며, 이는 産業社會의 발달 및 그에 수반된 사회의 해체과정에 의해 생겨난 세계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青少年非行의 심각성은 고도산업사회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그리고 社會主義國家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各國은 國家的 차원에서 青少年 犯罪의 예방과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4). 지난 몇 년간의 공식적 犯罪統計를 살펴보면 總犯罪에 대한 少年犯罪의 비율이 12%로 나타나며, 强力犯罪의 경우 실로 48.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青少年犯罪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總犯罪가 연평균 8.9%로 증가한 데 비하여, 少年犯罪는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强盜, 强姦, 放火 等 强力犯의 경우 少年犯은 23.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5).

〈表 1〉 年度別 少年犯罪 增加率　　〈'79～'83〉

罪種別 \ 年度別		'79	'80	'81	'82	'83	平　均
少年犯罪	發　生	59,975	65,469	69,549	86,347	97,124	
	增加率		9.2	6.2	24.2	12.5	13%
少年强力犯	發　生	2,265	3,372	4,107	4,481	5,149	
	增加率		48.9	21.8	9.1	14.9	23.7%

資料：治安本部 犯罪分析 1979～1983 參照

이러한 青少年非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青少年集團의 世界觀과 價値觀, 規範性向을 알아보고 犯罪, 刑罰, 刑事司法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刑事政策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青少年들의 意識과 行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青少年非行의 原因 및 背景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補助資料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硏究의 方法 및 對象

(1) 調査方法과 標本抽出

본 조사연구에서는 青少年의 法 및 犯罪에 관한 意識, 態度를 살펴보기 위하여 青少年을

(4) 선진산업국에서의 青少年非行에 대하여는 Don Gibbons, *Delinquent Behavior*, 2nd ed. (Prentice-Hall, 1976); 개발도상국의 青少年 非行의 격증현상은 M. Clinard and D. Abbott, *Crime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Wiley, 1973); 그리고 사회주의圈에 대하여는 E. Johnson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Criminology*, Vol. 2 (London: Greenwood Press)을 참조할 것.

(5) 李 鈞範, "强力犯罪의 治安上 問題點과 對策", 제25회 국가정책 세미나(1984) 발표논문 p. 3.

크게 高等學生, 大學生, 勤勞青少年, 非行青少年의 4개 標本集團으로 나누고. 각 集團에 대하여 設問紙調査의 方法을, 그리고 부수적으로 面接調査를 행하는 方式을 使用하였다.

設問紙의 문항은 青少年의 法에 대한 一般的인 知識, 評價, 信賴度 등의 法意識에 관한 諸側面을 살펴봄과 아울러 犯罪와 刑事司法에 대한 意識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作成되었으며, 특히 前者의 問項중 상당 부분을 1974年 林燦變교수가 행한 '韓國人의 法意識에 관한 調査硏究'의 결과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었다[6]. 그리고 後者에 대하여는 최근 輿論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事件들을 再構成하여 이에 대한 青少年들의 反應을 알아봄으로서 公式的 統制機關의 法執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犯罪와 刑事司法에 대한 青少年들의 一般的 態度를 추적하기 위한 意圖에서 작성되었다.

각 標本集團에 대한 標本抽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첫째, 高等學生標本은 서울 남강高等學校, 부산 대동高等學校 재학생 100명 및 서울 미림女高, 서울女商 100명을 對象으로 간단한 說明과 함께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통계적 처리가 가능했던 것은 이 중 190명(남 92, 여98)이었다.

둘째, 大學生標本은 서울대(남, 여), 부산의 몇몇 大學, 이화여대 在學生을 대상으로 응답을 얻었는데, 총 應答者數는 119명(男 46, 女 73)이었다.

셋째, 勤勞青少年 표본은 서울 시내 영세공장에서 일하는 青少年 및 영등포 女高 야간반(就業班)에 다니고 있는 구로工團內 就業女性을 對象으로 하였는데. 처리 가능했던 숫자는 모두 98명(男 43, 女 55)이었다.

넷째, 非行青少年 標本을 추출하기 위하여 서울(불광동 소재)과 인천의 少年院을 調査員들이 방문하였다. 그런데 인천의 少年院에는 대부분 罪質이 매우 重하고 특수한 非行少年들이어서 標本抽出의 代表性이 의문시되어 결국 本 調査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서울 少年院은 전국적으로 보아 분류처우기준을 통하여 볼 때 標準的인 非行少年을 수용하고 있다는 少年院長의 지적에 따라 서울少年院에 수용되어 있는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少年院生을 對象으로 調査를 실시하여 총 130명의 反應을 얻었다. 아울러 여기서는 設問紙 調査를 끝낸 후 open-ended question에 의하여 集團面接調査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朴炳武(當時 法大 4年, 現 司法硏修院生)군을 중심으로 하여 本校生 10명이 調査員이 되어 1983年 5月 末부터 6月 중순에 걸쳐 함으로 誠意있게 실시되었으며, 結果의 處理分析에 있어 韓寅燮君(本 大學院 博士課程)이 커다란 受苦를 하였다.

(2) 應答者의 特性

다음에는 각 標本集團의 特性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青少年들의 社會化와 規範에 대한 態度를 形成하는 데 있어 主要 原因으로 作用한다고 一般的으로 여겨지는 家庭的 背景을 비교해 보면, 〈表 2〉와 같다. 父母가 俱存하고 있지

(6) 林燦變,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大 法學, 제15권 1호(1974).

〈表 2〉 父母의 現 結婚狀態

	고 교 생	대 학 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합
부모구존	184(96.8)	111(93.3)	79(80.6)	95(73.1)	469(87.3%)
편 부			2 (2.0)	7 (5.4)	9 (1.7)
편 모	6 (3.2)	7 (5.9)	14(14.3)	26(20.0)	53 (9.9)
양친사망		1 (0.8)		2 (1.5)	3 (0.6)
무 응 답			3 (3.1)		3 (0.6)
합	190(100.0)	119(100.0)	98(100.0)	130(100.0)	537(100.0)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非行青少年과 勤勞青少年이 高校生, 大學生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非行青少年(26.9%)이 勤勞青少年(16.3%)보다 상당히 높아, 非行青少年에 缺損家庭이 많음을 보여준다.

다음 家族全體의 收入程度를 기준으로 각 標本集團들의 社會階層的 背景을 알아보자. 전체적으로 볼 때 大學生, 高校生, 非行青少年, 勤勞青少年의 순으로 家族收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조사에서는 非行青少年 家庭의 經濟的地位가 勤勞青少年의 경우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非行青少年의 敎育程度는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中退(45.4%) 및 高退 (26.2%)가 가장 많고 다음이 中卒(16.9%), 國卒이하(9.2%)이며 高卒이상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表 3〉 家族全體의 收入程度

집 단 / 한달소득	고 교 생	대 학 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합
20만원이하	10 (5.3)	3 (2.5)	20(20.4)	25(19.2)	58(10.8)
20만~ 50만원	112(58.9)	45(37.8)	51(52.0)	72(55.4)	280(52.1)
50만~150만원	55(28.9)	50(42.0)	15(15.3)	24(18.5)	144(26.8)
150만원이상	5 (2.6)	12(10.1)	1 (1.0)		18 (3.4)
무 응 답	8 (4.2)	9 (7.6)	11(11.2)	9 (6.9)	37 (6.9)

〈表 4〉 非行青少年의 敎育程度

학 력	국졸이하	중 퇴	중 졸	고 퇴	고 졸
인 원 수	12 (9.2)	59(45.4)	22(16.9)	34(26.2)	3 (2.3)
무 응 답					

III. 調査結果

(1) 法에 대한 態度의 認知的 側面

青少年들의 法에 대한 態度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青少年들이 法에 대하여 얼마만한 知識을 갖고 있으며 法을 어떻게 認識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問題

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法知識의 程度와 法意識의 類型에 따라 法에 대한 기본적인 態度가 달라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分析하기 위하여 法에 대한 語句聯想에 의한 어프로우치 및 간단한 設問紙調査(questionnaire study)를 통한 測定方法을 사용하였다.

1. 語句聯想法에 依한 分析

法에 대한 意識의 性格을 검토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사용한 方法은 法에 대한 語句聯想法(word association technique)에 의한 接近이었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문항이 open-ended question으로 되어 있어 처리하기 힘든 난점은 있겠지만 法에 관련된 갖가지 構成要素 중 青少年들이 어느 部分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느 部分을 특히 强調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强調를 통하여 法의 本質과 機能, 法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과 妥當性에 대한 青少年들의 評價를 간접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 또 나아가 法과 관련하여 特定한 單語意味를 聯想, 選擇하는 행위는 반사적으로 法의 다른 部面에 대한 무시, 배제를 意味하는 것인 바, 이러한 것을 살펴 봄으로써 언어의 선택, 배제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을 검토해 보는 것도 可能할 것이다. "法이란 말을 들을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말을 記入하라"는 問項에 대한 應答을 분류하여 집계한 結果는 〈表 5〉와 같다.

〈表 5〉 法의 聯想語 분석을 통하여 본 法意識

1) 法의 本質과 機能	171(31.8)	4) 實定法的 關心	6 (1.1)
1. 사회질서	51 (9.5)	1. 헌법(행정법, 기타 공법)	3 (0.6)
2. 도덕과 정의	18 (3.4)	2. 민법, 계약	2 (0.4)
2. 권력 (힘)	7 (1.3)	3. 기　　타	1 (0.2)
3. 규칙, 규범	26 (4.8)		
3. 통　　제	2 (0.4)	5) 法的 制裁	97(18.1)
4. 권 리 의 무	1 (0.2)	1. 감옥, 교도소	13 (2.4)
5. 법 준 수	66(12.3)	2. 형벌(제재, 강제)	57(10.6)
2) 國家와 統治	11 (2.0)	3. 범　　죄	27 (5.0)
1. 국가, 국민	3 (0.6)	6) 法에 대한 일반적 印象	171(31.8)
2. 통　　치	4 (0.7)	1. 긍정적 인상 a. 공정	14 (2.6)
3. 국 가 기 관 대통령	1 (0.2)	b. 정확	3 (0.6)
3. 국 가 기 관 국회, 국회의원	1 (0.2)	2. 부정적 인상 a. 엄격(냉혹, 잔인)	55(10.2)
4. 기　　타	2 (0.4)	b. 두려움(고통)	51 (9.5)
3) 法執行機關	36 (6.7)	c. 부패	11 (2.0)
1. 재　　판	12 (2.2)	d. 억압감	6 (1.1)
2. 법　　원	3 (0.6)	e. 제약(구속감)	28 (5.2)
3. 판　　사	9 (1.6)	3. 기　　타	3 (0.6)
4. 경찰, 형사	12 (2.2)	7) 무 응 답	45 (8.4)
		8) 총　　계	537(99.9)

〈表 5〉를 보면 應答者들은 '法의 本質과 機能' 및 '法에 대한 일반적 인상'으로 분류된 범주에 동일한 비율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1.8%). 그 중 應答者들이 5% 이상의 反應을 나타낸 項目을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法遵守'(12.3%)가 가장 높고, '刑罰, 制裁'(10.6%), '엄격, 냉혹'(10.2%), '두려움, 고통'(9.5%), '社會秩序'(9.5%), '제약, 구속감'(5.2%)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시 살펴보자면 法은 준수되어야 하고 社會秩序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反應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法을 民事的인 것보다는 刑罰, 制裁와 관련된 것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法에 대한 일반적 인상은 肯定的이기 보다는 否定的인 태도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유사한 분류를 행한 林熺燮敎授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青少年들은 一般國民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法의 本質과 機能의 범주보다는 法에 대한 一般的 印象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林熺燮敎授의 연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7] 法의 本質과 機能 (38.02%) 部分이 法에 대한 一般的 印象(17.34%)의 部分보다 2배 이상의 反應을 얻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兩者에 대한 反應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青少年集團이 成年集團보다 더 直觀的이고 情緖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法의 本質과 機能의 범주 가운데에는 社會秩序와 法遵守 등의 側面에 대한 認識이 正義, 規範(8.2%)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며 人權保障, 權利意識 등의 側面에 대한 認識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青少年들에게 法은 자신의 人權이나 權利, 利益을 위해서나 社會改革, 社會福利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法을 준수함으로써 社會秩序를 유지한다는 소극적인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態度는 青少年 뿐 아니라 一般國民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으로 지적되는 바[8], 이것은 곧 국민들의 法意識에 영향을 미치는 法制度와 그 운용의 한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實定法 자체(1.1%) 보다는 法執行機關(6.7%)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法意識이란 결국 法執行機關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社會構成員들이 實定規範보다는 法執行機關을 쉽게 연상하리란 점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터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判事와 警察, 刑事를 연상하는 사람은 약간이나마 비율(3.8%)을 점하고 있는 반면 檢事와 辯護士를 연상하는 사람은 全無하다는 점이다. 林熺燮敎授의 연구를 아울러 참고하면 이는 應答者와의 접촉頻度 내지 强度에 따른 차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겠다.

한국인에게 있어 法은 民事的인 것보다는 刑事的, 處罰的인 것과 우선적으로 관련되어진

(7) 林 熺燮, 前揭論文, p. 43-44.
(8) 林 熺燮, 前揭論文, p. 42.

다는 것은 法意識에 관한 기왕의 여러 조사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터이다. 青少年의 法意識을 다룬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지적은 妥當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法의 民事的 側面을 언급한 비율이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法을 가지고, 감옥, 교도소 (2.4%), 刑罰, 制裁 (10.6%), 犯罪 (5.0%) 등을 연상하고 있는 비율은 18.1% 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青少年들에게 있어서 法은 주로 犯罪, 刑罰 혹은 制裁, 그리고 감옥 내지 교도소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法에 대한 인식은 法에 대한 일반적 인상에 있어서 否定的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法으로부터 公正, 正確 등 肯定的 인상을 표명하는 비율이 3.1%에 불과한 반면, 法으로부터 '엄격, 냉혹'(10.2%), '두려움, 공포'(9.5%), '부패, 부조리' (2.0%), '제약, 구속' (5.2%) 등 否定的인 인상을 받고 있는 비율은 28.1%나 된다. 즉 法에 대한 否定的 인상이 肯定的 인상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林燦燮教授 硏究와 크게 상충되는데, 前記 林燦燮教授의 연구에서는 肯定 對 否定의 비율이 12.89 對 4.4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青少年集團이 一般國民보다 法에 대하여 훨씬 否定的 印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응답자의 반응을 標本集團별로 大別해 보면 〈表 6〉와 같다. 대체로 大學生 집단과 勤勞青少年 集團은 '法의 本質과 機能'으로 분류된 범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非行青少年集團은 法에 대한 일반적 인상의 범주, 그것도 부정적 인상의 범주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高等學生 集團의 경우 양 범주에 각각 비슷한 비율로 반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法의 本質과 機能 부분이라는 것이 抽象的인 성격을 지닌 반면, 法에 대한 일반적 인상의 부분이 보다 경험적이고 실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각 集團간의 教育내지 社會化의 차이, 法과의 接觸頻度와 强度, 接觸經驗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른 集團과 비교해 볼 때 非行青少年의 集團은 法의 本質과 機能의 범주에는 제한된 반응밖에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法認識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들이 많은 반응을 보인 부분을 연결해 본다면 그들에게 法은 곧 警察·刑事

〈表 6〉 標本集團別 分類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법의 본질과 기능	63(33.2)	52(43.7)	34(34.7)	22 (6.9)
국가와 통치	6 (3.1)	1 (0.7)	0	4 (3.1)
법집행기관	19(10.0)	2 (1.5)	7 (7.2)	8 (6.2)
실정법적 관심	2 (1.1)	1 (0.7)	2 (2.0)	1 (0.7)
법적 제재	35(18.4)	17(14.3)	21(21.4)	24(18.5)
일반적 인상	67(35.3)	44(36.9)	12(12.2)	49(37.7)
무응답	0	2 (1.5)	22(22.4)	22(16.9)

(3.1%)이자 犯罪(5.1%), 刑罰(6.2%), 監獄(6.9%)이며, 따라서 엄격하고 냉혹한(9.2%) 동시에 두려움과 고통(17.7%)을 안겨주는 존재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한 응답자는 '돈과 刑事와 懲役과 手錠(手甲)'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상 語句聯想的 分析에 의한 인식적 태도의 전반적 傾向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一般國民보다 青少年 集團은 法에 대하여 비교적 直觀的이고 情緖的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法의 本質과 機能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法을 社會秩序의 維持, 遵守해야할 規範 등으로 파악하는 遵守型 내지 順從型的 태도가 지배적이고 이에 비해 權利意識이나 人權保障에 관련하여서 파악하는 비율은 적다.

셋째, 實定法보다는 法執行機關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그 중에서도 檢事, 辯護士보다 警察·判事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난다.

넷째, 法은 民事的인 요소보다는 刑事的이고 處罰的인 요소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다섯째, 集團별로 나누어 볼 때, 大學生과 勤勞青少年들이 주로 法의 本質과 機能 등 法의 추상적 측면에 응답하고 있는 반면, 非行青少年들은 대체로 法的 制裁와 法에 대한 否定的인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연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法에 대한 知識(Knowledge of the Law)

社會構成員들의 法에 대한 知識은 일종의 道具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法知識이 풍부할 수록 복잡다단한 社會現實에 적응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法에 대한 知識은 法의 實效性 및 妥當性에 대한 評價의 前提를 이룬다. 이렇게 본다면 法에 대한 知識은 복잡한 社會關係의 諸條件하에서 효율적인 행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9]인 동시에 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평가의 바탕을 구성하는 것이다.

青少年들의 法에 대한 知識을 추정하기 위해 여기서는 가장 초보적인 몇 가지 문항을 작성해 보았다.

"民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大學生(100.0%), 高校生(98.9%), 勤勞青少年(95.9%), 非行青少年(72.3%)의 순서로 답함으로써 法知識이 教育水準에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假定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民法은 刑法보다 훨씬 덜 쓰이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올바른 답은 물론 '아니오'이다. 그러나 法으로부터 民事的인 것보다 刑事的인 측면을 쉽게 연상하는 우리 풍토에서는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 어느 정도의 法的 知識이 요구되는 것이며, 또한 응답자들의 法生活

(9) Podgórecki, *op. cit.*, p. 91.

및 法的 體驗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青少年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37.1 대 37.2로 正答과 誤答을 택한 비율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자면, 正答을 택한 순이 大學生(54.6%), 高校生(43.7%), 勤勞青少年 (38.8%), 非行青少年 (10.8%)으로 나타나 이 역시 教育水準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特記할 것은 非行青少年들의 반응이다. 非行青少年의 45.4%가 刑法이 民法보다 많이 쓰인다고 느끼고, 정답을 제시한 비율은 10.8%에 지나지 않는 바, 이것은 곧 非行青少年들의 法體驗의 特性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登記를 해야 된다는 事實을 아십니까"라는 設問에 대하여는 大學生(94.9), 勤勞青少年(93.9), 高校生(92.1), 非行青少年(70.8)의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勤勞青少年과 高校生이 약간의 차이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教育水準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調査結果를 요약하자면, 法에 대한 知識은 教育水準과 가장 긴밀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男·女 내지 收入程度 등은 거의 의미있는 變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적어도 법에 관한 사항의 知識에 있어서는 大學生, 高等學生, 勤勞青少年들이 그다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데 반해, 이들과 非行青少年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7〉 法知識(Knowledge of the law)

		예	아 니 오	모 르 겠 다
7-1 민법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고 등 학 생	188 (98.9)	2 (1.1)	
	대 학 생	119(100.0)		
	근로청소년	94 (95.9)	2 (2.0)	2 (2.0)
	비행청소년	94 (72.3)	15 (11.5)	21 (16.2)
	계	495 (92.2)	19 (3.5)	23 (4.3)
7-2 민법이란 형법보다 훨씬 덜 쓰이고 있다.	고 등 학 생	65 (34.2)	83 (43.7)	45 (23.7)
	대 학 생	36 (30.3)	65 (54.6)	18 (15.1)
	근로청소년	39 (39.8)	38 (38.8)	20 (20.4)
	비행청소년	59 (45.4)	14 (10.8)	57 (43.8)
	계	199 (37.1)	200 (37.2)	140 (26.1)
7-3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 등 학 생	175 (92.1)	12 (6.3)	3 (1.6)
	대 학 생	113 (94.9)	4 (3.4)	2 (1.7)
	근로청소년	92 (93.9)	4 (4.1)	2 (2.0)
	비행청소년	92 (70.8)	37 (28.5)	
	계	472 (87.9)	57 (10.6)	7 (1.3)

(2) 法에 대한 態度의 평가적 측면

① 法의 本質, 機能에 대한 평가

오늘날 法資料의 증대와 法內容의 복잡성은 일반 시민들이 法規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 시민들은 개별적 法規範의 正當性을 평가하고 그에 입각하여 행동을 선택한다기 보다는 規範의 正當性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면서 주어진 法規範에 순응하는 외의 代案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일반 시민들은 法規보다 法原理, 나아가 法精神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며, 그럴수록 法規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그러면 青少年들에게 法은 누구의 法, 어떠한 秩序를 구현하는 것으로 인식, 평가되고 있는가?

대다수의 青少年들은 社會를 살아가는 데 있어 法의 必要性을 肯定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法이 없으면 世上이 매우 편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4/5 이상이 否定的인 방향으로 응답하고 있는(83.4%) 것이다. 集團별로 살펴보면 高校生과 勤勞青少年이 法의 必要性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大學生이 그 다음이고 非行青少年의 경우 法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다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7%).

그러나 法을 "하늘이 정해준 것"으로 보는 입장은 전체 응답자의 22.5%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문항을 제시한 林婧燮教授의 연구와 비교하자면, 青少年들은 全國標本(42%)과 大學生標本(8.88%)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大學生集團 역시 否定的인 반응이 압도적(85.7%)이지만, 非行青少年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오히려 일반 국민과 유사한 긍정적 반응 (38.5% 찬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法에는 나쁜 法도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하여 총응답자의 65.4%가 同意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法의 妥當性에 대한 이같은 否定的 態度는 조사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10] 본 조사의 결과로는 青少年의 2/3 가량이 惡法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集團별로 살펴보면 大學生이 80.7%로 가장 높고 다음 高校生, 勤勞青少年, 非行青少年의 順으로 나타나는 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이러한 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겠다.

다음 "法이란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관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69.6%가 동의한 한편, 23.1%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集團별로 보면 勤勞青少年과 高校生은 긍정하는 입장이, 非行青少年과 大學生은 否定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데, 그 중에서

(10) 유사한 문항에 대한 임 희섭교수의 연구에서는 전국 표본은 73.4%, 대학생과 법조인 표본은 각각 86.8%가 "나쁜 法"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임 희섭교수 p.46) 한편 梁 承斗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惡法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율은 최근 15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 승두, "우리 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法律研究(第二輯), pp. 362-364.)

는 특히 大學生集團은 1/3 가량이 法을 국민들이 만든다는 견해에 대하여 회의 내지 否定的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입장은 法의 權利回復的 내지 救濟的 기능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된 "法은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勤勞青少年의 가장 많은 비율로(77.6%) 이에 동의하는 한편 高校生과 非行青少年들은 거의 엇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57% 전후), 大學生의 경우에는 43%만이 동의할 뿐이다.

이상 法의 本質 내지 機能에 대한 青少年들의 意識은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

〈表 8〉 法에 대한 評價(Evaluation of the Law)

		예	아 니 오	모 르 겠 다
8-1 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고 등 학 생	37(19.5)	138(72.6)	15 (7.9)
	대 학 생	6 (5.0)	102(85.7)	11 (9.2)
	근로청소년	28(28.6)	62(63.3)	5 (5.1)
	비행청소년	50(38.5)	55(42.3)	25(19.2)
	계	121(22.5)	357(66.5)	56(10.4)
8-2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한 것이다.	고 등 학 생	108(56.8)	56(29.5)	26(13.7)
	대 학 생	52(43.7)	41(34.5)	26(21.8)
	근로청소년	76(77.6)	13(13.3)	6 (6.1)
	비행청소년	75(57.7)	37(28.5)	17(13.1)
	계	311(57.9)	147(27.4)	75(14.0)
8-3 법이 없으면 세상이 매우 편할 것이다.	고 등 학 생	4 (2.1)	174(91.6)	12 (6.3)
	대 학 생	4 (3.4)	95(79.8)	10 (8.4)
	근로청소년	5 (5.1)	88(89.8)	2 (2.0)
	비행청소년	23(17.7)	91(70.0)	15(11.5)
	계	36 (6.7)	448(83.4)	39(72.6)
8-4 법이란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것이다.	고 등 학 생	148(77.9)	44(23.2)	7 (3.7)
	대 학 생	63(52.9)	39(32.8)	17(14.3)
	근로청소년	81(82.7)	15(15.3)	
	비행청소년	85(65.4)	29(22.3)	15(11.5)
	계	337(70.2)	127(23.6)	39 (7.3)
8-5 법에는 나쁜 법도 있다.	고 등 학 생	136(71.6)	24(12.6)	29(15.3)
	대 학 생	96(80.7)	12(10.1)	11 (9.2)
	근로청소년	53(54.1)	29(29.6)	10(10.2)
	비행청소년	66(50.8)	33(25.4)	23(17.7)
	계	351(65.4)	98(18.2)	73(13.6)

첫째, 대다수가 社會내의 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惡法도 있다고 생각하고, 法을 하늘이 정해 준 道理라는 차원에서보다는 國民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法의 妥當性에 대하여 青少年集團은 일반 국민보다는 약간 否定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볼 때 勤勞青少年과 高校生은 法과 秩序(law-and-order)의 必要性 및 妥當性을 긍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반면, 大學生 및 非行青少年들은 보다 否定的, 批判的 태도를 취하고 있다. 勤勞青少年들이 高校生보다 오히려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울러 주목된다. 非行青少年은 法의 本質에 관한 한 勤勞青少年과 별 차이가 없으나 法의 機能에 대하여는 보다 否定的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에 반하여 大學生集團은 양자 모두에 대하여 否定的 내지 批判的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法遵守理由

青少年들이 法을 遵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여타의 社會集團과 비교해 볼 때 어떤 特性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여기서의 응답집단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자.

4/5에 달하는 대다수의 青少年들(80.4%)은 法을 지키는 이유로서 "法을 지켜야 社會가 살기 좋게 된다"에 응답을 하고 있어 法의 社會的 機能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林燦燮 敎授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인의 3/4에 가까운 응답자들(71%)이 "法을 만들고 施行하는 사람들이 愛國者니까" 法을 지킨다고 하였음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同一한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法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저하게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法의 正當性의 根據 및 遵法의 根據를 도출함

〈表 9〉 귀하께서는 法을 왜 지키시는지요?

	고등학생	대 학 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계
9-1 법을 만든 사람들이 애국자이니까			1 (1.0)		1 (0.2)
9-2 법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 대신 만든 거니까	2 (1.1)	4 (3.4)	4 (4.1)	4 (3.1)	14 (2.6)
9-3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13 (6.8)	9 (7.6)	1 (1.0)	36(27.7)	59(11.0)
9-4 법은 관청의 명령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귀찮은 일을 당하므로	7 (3.7)	3 (2.5)	1 (1.0)	1 (1.0)	12(2.2)
9-5 법을 잘 지켜야 사회가 살기 좋게 되므로	167(87.9)	95(79.8)	88(89.8)	82(63.1)	432(80.4)

에 있어 人的 要素 보다는 機能的 要素를 더욱 중시하는 태도와 직결되는 바, 여기서 法意識의 近代化된 한 면모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標本集團들이 이같이 機能論的 관점에서 遵法의 이유를 찾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반면, 非行青少年의 경우 1/4 이상의 비율(27.7%)이 "法을 지키지 않으면 罰을 받으니까" 준수한다고 반응하고 있어 또한 주목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規範의 內在化(internalization of the norm) 보다는 오히려 威脅과 否定的 制裁(sanction)가 法을 지키게끔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앞서의 語句聯想에 의한 분석과 본 응답을 종합하면, 非行青少年들의 法體驗이 그들의 法社會化(legal socialization)에 끼친 영향을 看取할 수 있겠다.

(3) 法에 대한 態度의 情緖的 側面

오늘날 法體系의 複雜性은 法에 대한 광범한 無知를 결과하고 있는 바, 그럴수록 法의 妥當性과 法에 대한 信賴度는 사회성원들의 法에 대한 일반적 정서적 태도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서적 태도는 일상적인 法生活 및 大衆媒體 등을 통한 間接的 體驗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青少年의 경우에는 그 연령층의 특성상 論理的 대응보다 感情的 반응이 우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青少年에 있어 法的 感情과 그것을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은 青少年의 法意識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青少年들의 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法疎外感, 法에 대한 信賴感 및 法執行機關에 대한 信賴感으로 크게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① 法的 疎外感(legal alienation)

青少年들은 法生活의 과정에서 法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知識과 接近方法을 알고 있어 法을 통제·조종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면 法에 대한 친근감 내지 法的 同一視化(legal identification)가 증대할 것이다. 반대로 法에 대해 無知하거나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면 法에 대한 無力感 내지 疎外感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우선 총응답자의 40.6%는 "요즈음 法이 불필요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보다 오히려 반응자의 法에 대한 主觀的 感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일한 문항을 제시한 林嬉燮敎授의 연구에서의 全國標本도 이와 大差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38.23%). 집단별로 살펴 보면 勤勞青少年이 가장 낮고, 高校生, 大學生이 그 다음이며, 非行青少年은 반수 이상이 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9%).

한편 階層과의 관련하에서 법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法이 사람들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정·집행되어지는 것으로 意識되는가? 이에 대하여 青少

年들의 경우 貧富 및 권력에 따른 法의 選擇性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43.8%). 그러나 거의 40%가량(40.8%)이 "法은 權力과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有利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法的 信賴度의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단별로 볼 때 勤勞青少年이 法의 差別性을 부인하는 비율이 대다수인 반면, 非行青少年의 경우에는 80%가 이를 긍정하고 있다. 非行青少年들이 느끼는 이 같은 法的 疎外感은 그들에게 상대적 剝奪感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非行青少年들의 이러한 法的 疎外感은 "法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듯하다"에 대하여 다른 標本集團보다 많은 33.8%의 반응을 보인 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青少年集團의 法的 疎外感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設問調査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青少年들은 法의 公平, 妥當性에 대한 信賴度가 상당히 낮으며 상당한 정도의 法的 疎外感을 느끼고 있다.

둘째, 法的 同一視感은 勤勞青少年, 高校生, 大學生, 非行青少年의 順으로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청소년들이 法生活에서의 法의 否定的 機能을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非行青少年의 경우에는 法的 疎外感과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다른 集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表 10〉 法的 疎外感의 程度(Legal Alienation)

		예	아 니 오	모 르 겠 다
10-1 요즈음은 法이 불필요하게 많다	고 등 학 생	62(32.6)	92(48.4)	36(18.9)
	대 학 생	57(47.9)	34(28.6)	28(23.5)
	근로청소년	25(25.5)	56(57.1)	17(17.3)
	비행청소년	74(56.9)	31(23.8)	25(19.2)
	계	218(40.6)	213(39.7)	106(19.7)
10-2 법은 권력과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고 등 학 생	57(30.0)	96(50.5)	37(19.5)
	대 학 생	41(34.5)	43(36.1)	35(29.4)
	근로청소년	17(17.3)	74(75.5)	6 (6.1)
	비행청소년	104(80.0)	22(16.9)	4 (3.1)
	계	219(40.8)	235(43.8)	82(15.3)
10-3 법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듯 하다	고 등 학 생	35(18.4)	127(66.8)	28(14.7)
	대 학 생	32(26.9)	61(51.3)	26(21.8)
	근로청소년	14(14.3)	72(73.5)	9 (9.2)
	비행청소년	44(33.8)	69(53.1)	15(11.5)
	계	125(23.3)	329(61.3)	78(14.5)

② 法에 대한 信賴感(Respect of the Law)

현대사회에 있어 法은 기존의 여타의 行爲規範을 흡수·포괄하는 까닭에 단순히 하나의

規範現象이 아니라 超規範的現象(metanormative phenomenon)으로 나타난다[11]. 일단 形式的인 法規가 제정되면 그것은 國家의 權威에 의하여 保證되며 개개인의 行爲의 指導原理로서, 나아가 紛爭解決의 準則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法에 대한 尊重心 내지 信賴度는 法體系의 효율적인 機能遂行을 위해 요구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측면을 구성한다.

우리 사회에서 法은 社會를 살아 나가는 데 있어 바람직한 行爲基準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法的 가치가 여타의 가치보다 더 信賴와 존중을 받고 있는가? 그리하여 法을 준수하는 데 대해 적극적인 價値賦與를 행하고 있는가? 다음에는 이들 문제에 대한 青少年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多數의 青少年들은 "항상 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75.6%). 이와 같이 法은 언제, 어느 경우에서나 바람직한 行爲의 指導原理로 존중되지는 못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法을 항상 잘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66.5%가 肯定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견 모순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表 8-5〉에 대한 반응과 관련시키자면, 다수의 응답자들의 태도는 惡法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또 法이 언제나 훌륭한 行爲基準을 제공해 준다는 데 대하여는 회의적이면서도, 그러한 法을 遵守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青少年들의 이러한 반응은 法意識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대체로 일치하여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데 이는 곧 전체로서의 人民은 개개인의 태도와 구별되는 集合的 態度(Collective attitude)를 保持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12] 이러한 태도는 오랜 時間에 걸쳐 강화되어 온, 사회의 집단적 경험의 所産이자, 근래에 와서는 國家이데올로기에 의해 한층 강화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法에 대한 尊重心과도 연결되는 이러한 社會的 資本은 아마도 그 歷史的 傳統의 무게로 인해 쉽사리 변화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방금 논의한 두가지 반응 사이의 乖離는 法에 대한 情緖的 반응과 행동에 관련되는 반응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만일 다르게 행동할 可能性 내지 能力이 생겨날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우선 다수의 青少年들은 "요즈음 法보다 돈이나 權力이 훨씬 더 위력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62.2%). 그러나 보다 위력있는 "돈이나 名譽, 權力이 생긴다면 기꺼이 法을 어기겠다"고 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하다. 즉 계층과의 관련하에서 볼 때 過半數가 法에 대한 信賴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더라도, 行

(11) Hugh Collins, *Marxism and Law*(Oxford: Clarenden Press, 1982), p. 88.

(12) 어떠한 경우에도 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Podgórecki는 소크라테스적 法律觀(Socratic View of the Law)이라고 부른다. 주지하듯이 소크라테스는 그에 관한 事案에 法을 적용한 판사들을 존경하지 않았음에도 法을 존중했다. 그의 지침은 法律이 심지어 惡法이고 구체적 맥락에서 잘못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法體系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Podgórecki, *cp. cit.*, p. 96)

動的 次元에서는 法秩序 존중의 價値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 集團별로 반응을 나누어 살펴보자. 여기서도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勤勞青少年, 高等學生, 大學生, 非行青少年의 順으로 法에 대한 信賴와 尊重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青少年들의 경우 압도적으로 法尊重的, 法遵守的 態度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非行青少年들은 "법보다 돈, 權力이 훨씬 위력이 크다"고 응답하고 있고(81.5%), 따라서 "돈, 권력이 생기면 기꺼이 法을 어기겠다"는 비율도 다른 集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16.9%). 이는 非行青少年의 法的 疎外感과 法秩序에 대한 상대적인 輕視感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大學生의 경우 맹목적인 法遵守的 態度의 妥當性에 상당히 批判的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37.0%).

〈表 11〉 法에 대한 信賴感(Respect of the Law)

		예	아니오	모르겠다
11-1. 항상 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고 등 학 생	154(81.1)	24(12.6)	12(6.3)
	대 학 생	92(77.3)	22(18.5)	15(12.6)
	근 로 청 소 년	54(55.1)	33(33.7)	8(8.2)
	비 행 청 소 년	106(81.5)	11(8.5)	13(10.0)
	계	406(75.6)	90(16.8)	48(8.9)
11-2. 요즈음 法보다 돈이나 권력이 훨씬 더 위력이 크다.	고 등 학 생	109(57.4)	57(30.0)	24(12.6)
	대 학 생	78(65.5)	28(23.5)	11(5.8)
	근 로 청 소 년	41(41.8)	45(45.9)	7(7.1)
	비 행 청 소 년	106(81.5)	17(13.1)	5(3.8)
	계	334(62.2)	147(27.4)	47(8.8)
11-3. 돈이나 명예 권력이 생긴다면 기꺼이 法을 어기겠다.	고 등 학 생	11(5.7)	158(83.2)	21(11.1)
	대 학 생	6(5.0)	96(80.7)	17(14.3)
	근 로 청 소 년	3(3.1)	93(94.9)	2(2.0)
	비 행 청 소 년	22(16.9)	90(69.2)	18(13.8)
	계	42(7.8)	437(81.4)	58(10.8)
11-4. 요즈음 法을 항상 잘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고 등 학 생	141(74.2)	34(17.9)	15(7.9)
	대 학 생	53(44.5)	44(37.0)	22(18.5)
	근 로 청 소 년	84(85.7)	5(5.1)	9(9.2)
	비 행 청 소 년	79(60.8)	28(21.5)	23(17.7)
	계	357(66.5)	111(20.7)	69(12.8)

③ 法執行機關에 대한 信賴度

法을 社會生活속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制度라는 관점에서 볼 때, 法은 實定法規의 總體 이상의 것으로 파악된다. 法은 法規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法解範을 解釋·適用·執行하는 사람들, 즉 法運用者(law-man)도 포함시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社

會構成員들의 法에 대한 信賴度를 측정하는 한 방법은 法執行機關에 대한 반응을 알아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青少年들의 法執行機關에 대한 반응을 한번 알아 보자.

青少年들의 法執行機關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볼 때 信賴하는 편보다 不信하는 편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警察 기타 公務員들이 法을 遵守하는 것같다"는 항목에 대하여 찬성하는 青少年이 34.3%인 반면, 반대하는 측은 46.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不信意識의 비율은 判事들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유지되는데, 보다 다수의 青少年들은 判事들이 공평하게 法을 적용하는가 라는 물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선 警察이나 法院에 告訴하겠다"는 측이 반수를 약간 상회하고(54.6%), 그와 반대로 "裁判을 하면 돈과 시간이 너무 들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겠다"고 생각하는 편은 1/4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6%). 아직 青少年이기 때문에 실제로 告訴나 裁判의 體驗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青少年의 경우 이러한 문항은 行動的 次元에 직접 관련지워지기 보다는 오히려 法執行機關에 대한 일정한 心理的 態度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이제 집단별로 나누어 반응을 고찰해 보자.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非行青少年들의 法執行機關에 대한 태도는 압도적으로 否定的이라는 것이다. 警察·公務員의 法遵守與否에 대하여는 60.8%가, 判事의 공평한 法適用의 여부에 대하여는 61.5%가 不信내지 懷疑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警察·法院등 法執行機關 依存度도 지극히 낮게 나타난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警察·法院에 告訴하지 않겠다는 편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53.8%) 이들의 法執行機關에 대한 忌避的 態度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다.

警察·公務員 및 判事들에 대한 각 集團의 반응을 살펴보면, 非行青少年과 大學生들은 否定的 態度를 가지고 있는 반면, 勤勞青少年들은 양자 모두에 肯定的 반응을 보이고, 高校生들은 警察에 대하여는 否定的 印象을, 判事에 대하여는 약간 肯定的 인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 法에 대한 青少年들의 情緖的 태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青少年들은 法的 疎外感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法에 대한 信賴感 내지 바람직한 行爲規範으로서의 法에 대해서는 否定的 態度가 우세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法을 존중하고 遵守하는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편 法執行機關에 대하여는 회의 내지 불신하는 태도가 뚜렷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呼訴手段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둘째, 集團별로 볼 때 대체로 勤勞青少年, 高校生, 大學生, 非行青少年의 順으로 해서 法에 대해 順應的이고 높은 信賴度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勤勞青少年이 順應的이고 肯定的인 태도를 가장 뚜렷이 보이고 있는 반면, 非行青少年들은 계층과의 관계에서

〈表 12〉 法執行機關에 대한 信賴度

		예	아니오	모르겠다
12-1. 아직도 판사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法을 적용하는 듯하다.	고 등 학 생	71(37.4)	67(35.3)	52(27.4)
	대 학 생	23(19.3)	64(53.8)	32(26.9)
	근 로 청 소 년	46(46.9)	31(31.6)	20(20.4)
	비 행 청 소 년	27(20.8)	80(61.5)	23(17.7)
	계	167(31.1)	242(45.1)	127(23.6)
12-2.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선 경찰이나 법원에 고소하겠다.	고 등 학 생	113(59.5)	57(30.0)	20(10.5)
	대 학 생	62(52.1)	37(31.1)	20(16.8)
	근 로 청 소 년	73(74.5)	16(16.3)	8(8.2)
	비 행 청 소 년	45(34.6)	70(53.8)	15(11.5)
	계	293(54.6)	180(33.5)	63(11.7)
12-3. 요즈음은 경찰 기타 공무원들이 法을 준수하는 것 같다.	고 등 학 생	72(37.9)	85(44.7)	33(17.4)
	대 학 생	39(32.8)	50(42.0)	30(25.2)
	근 로 청 소 년	47(48.1)	34(34.7)	12(12.2)
	비 행 청 소 년	26(20.0)	79(60.8)	25(19.2)
	계	184(34.3)	248(46.2)	100(18.6)
12-4. 재판을 하면 돈이나 시간이 너무 들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겠다.	고 등 학 생	53(27.9)	123(64.7)	16(8.4)
	대 학 생	17(14.3)	86(72.3)	16(13.4)
	근 로 청 소 년	17(17.3)	71(72.4)	8(8.2)
	비 행 청 소 년	45(34.6)	60(46.2)	15(11.5)
	계	132(24.6)	340(63.3)	55(10.2)

法의 公正性을 크게 의심하고 있고, 行爲規範으로서의 法에 대하여도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法執行機關에 대해서도 否定的이고도 忌避的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高校生의 경우 勤勞青少年보다는 덜하지만 대체로 順應的이고 肯定的인 感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大學生의 경우는 오히려 否定的인 태도가 강하지만 아울러 批判的이고 積極的인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犯罪 및 刑罰에 대한 態度

오늘날 犯罪狀況이 악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犯罪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함께 犯罪에 대한 恐怖感(the fear of crime)이 널리 팽배되어 있는 듯하다. 犯罪에 대한 不安 내지 두려움은 生命·身體·自由를 위협하는 對人犯罪와 財產의 窃取·强取와 같은 財產犯罪에 있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한 연구는 거리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 공격받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犯罪에 대한 가장 큰 공포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13)

(13) Robert W. Winslow, *Crime in a Free Society-Selections from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Dickenson Pub., 1968), p. 20.

비록 이들 犯罪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것이다. 예컨대 홀로 밤길을 걷기가 두렵다는 느낌으로 인해 市民들의 生活習慣이 달라지는 것은 자주 지적되어 온 바이다.(14)

일반 시민의 犯罪에 대한 不安과 공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의 安寧秩序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强力事件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측정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218명) 가운데 80%이상이 犯罪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强力犯에 대해서는 90%이상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밤길에서 직접적인 犯罪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견이 82%에 달하고 있다.(15)

또 다른 조사연구를 인용하자면, "犯罪때문에 밤길을 걷기 두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青少年은 전체의 37.88%(근로 청소년 28.85%, 고교생 49.39%)를 차지하고 있다.(16) 이는 일반 시민보다는 적지만 역시 犯罪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할 것이다.

犯罪에 대한 대중적 관심 및 태도는 對犯罪對策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한다. 犯罪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抑壓的 觀點, 社會改良(social amelioration)的 觀點, 道德的 觀點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17) 抑壓的 관점은 "보다 많은 警察, 강력한 처벌"로 집약된다.

社會改良的 관점은 "보다 많은 직업, 기회, 여가 및 青少年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道德的 觀點은 家庭, 宗教, 어린이 교육에 치중하는 조치를 뜻한다.

미국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공중의 반응은 대체로 抑壓的 觀點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8) 다수의 集團은 높은 犯罪率이 法이 너무 관대하고, 刑法이 충분히 强力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보며, 필요한 경우에는 警察은 被疑者를 거칠게 다룰 權利가 있다고 여기는 한편(73%), 犯罪問題에 대처하기 위해 警察官은 많은 權力을 가져야 하며(52%), 심지어 犯罪人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을 체포할 위험도 허용될 수 있다(42%)고 믿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반응들은 犯罪의 量的 增大와 質的 심각화에 대한 일반적 반응이라 가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과연 青少年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대시되는 犯罪들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들은 강력한 警察, 犯罪人에 대한 준엄한 處罰과 같은 抑壓的 措置를 선호하고 있는가? 犯罪統制의 역할을 수행하는 警察의 사회적인 지위(social status) 및 信賴度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4) President's Commiss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Crime and Its Impact-An Assess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p. 88.
(15) 李 鈞範, 前揭論文 p. 2.
(16) 沈 英姬, "한국의 '숨은 非行'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 사회학, 15집(1981), p. 84.
(17) Winslow, *op. cit.*, p. 23.
(18) Richard Quinney,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75), pp. 268-271.

이러한 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假想的인 强盜强姦犯 사례를 구성해 보았다.

〈表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K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칼 도끼 등을 들고 대낮에 여대생 혼자서 지키는 집에 강도를 하기위해 들어갔다. 많은 돈과 귀중품을 훔친후 친구들과 같이 여대생이 반항함에도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끝에 여대생을 추행하고서 집을 나왔다. 그후 그 여대생은 거의 정신 착란 증세를 보였으며 K는 그당시 K가 도망치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어 자신이 아는 교회에 피신하러 들어왔다. 이에 그 교회의 목사는 K의 범죄를 알면서도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 교회에 감추고 그에게 설교를 함으로써 수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본 사례는 統制機關과 社會輿論에 의해 널리 문제시되어 온 犯罪를 典型化한 것이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장 큰 恐怖感을 자아내는 유형의 犯罪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青少年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른바 家庭破壞事犯[19]에 대하여도 死刑과 같은 嚴罰主義的 조치를 그다지 選好하지 않는 입장이 더 큰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2.1%). 그리고 반수 이상이 이들에 대한 警察의 拷問行爲의 正當性을 부인하고 있다(52.7%). 集團별로 살펴보면 이들 犯罪에 대한 死刑宣告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비율은 非行青少年, 勤勞青少年, 大學生, 高校生 順으로 높은 데, 非行青少年의 경우 압도적으로 이러한 嚴罰主義的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82.3%). 한편 拷問에 대하여는 勤勞青少年은 오히려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58.2%), 반대하는 비율은 非行青少年(60.8%)보다 大學生(67.2%)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拷問制度에 대하여 勤勞青少年들은 道具主義的 관점을 취하는 데 반하여, 大學生들은 人權的인 관점을 중시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겠다.

다음 "警察은 K를 숨겨 준 목사를 犯人隱匿罪로 검거했는 바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도[20] 반대하는 비율이 54.0%로 찬성(3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반수의 青少年들이 警察의 法執行 혹은 實定法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며, 그보다 우월한 권위를 용인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實定法의 우월성에 터잡고 있는 法施行機關에 대한 青少年들의 不信感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集團별로 살펴 보면 4표본집단 모두 반대의 입장이 우세한 데, 그 중 非行青少年이 역시 70.8%로 가장 높고, 다

(19) 이러한 住居侵入 및 强盜强姦犯에 대하여 家庭破壞事犯이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썩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犯罪가 다소간 被害者의 가정에 파괴적 효과를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 이 문제에 대한 警察·法院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 判決(1983.3.8, 大判 82도 3248)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죄지은 자를 맞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그 갈 길을 일으는 것은 사제로서의 소임이라 할 것이나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따위의 일은 이미 그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저각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음 大學生(51.3%), 勤勞靑少年(50%), 高校生(46.3%)의 順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矯導所의 임무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80.6%)은 應報(retribution)보다는 矯正(rehabilitation)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러한 重犯罪人에 대하여도 矯正의 必要性과 妥當性을 인정하고 있다.

〈表 14〉 强力犯罪에 대한 態度

		예	아니오	모르겠다
14-1. 위에서 K를 잡은 경찰은 K의 공범과 또 K의 그 밖에 죄등을 밝혀 내기 위해 고문을 해도 된다고 봅니까?	고 등 학 생	81(42.6)	92(48.4)	7(3.7)
	대 학 생	32(26.9)	80(67.2)	7(5.9)
	근 로 청 소 년	57(58.2)	32(32.7)	8(8.2)
	비 행 청 소 년	35(26.9)	79(60.8)	15(11.5)
	계	205(38.2)	283(52.7)	37(6.9)
14-2. 경찰은 K를 숨겨준 목사를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하여 범인은닉죄로 검거 했는 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 등 학 생	84(44.2)	88(46.3)	20(10.5)
	대 학 생	43(36.1)	61(51.3)	15(12.6)
	근 로 청 소 년	43(43.9)	49(50.0)	13(13.3)
	비 행 청 소 년	24(18.5)	92(70.8)	14(10.8)
	계	194(36.1)	290(54.0)	62(11.5)
14-3. K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 등 학 생	73(38.4)	94(49.5)	23(12.1)
	대 학 생	30(25.2)	55(46.2)	24(20.2)
	근 로 청 소 년	26(26.5)	55(56.1)	16(16.3)
	비 행 청 소 년	3(2.3)	107(82.3)	20(15.4)
	계	132(24.6)	280(52.1)	83(15.5)
14-4. K의 행위는 나쁘지만 K를 교도소에 수감시키면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것이 교도소의 임무로 생각합니까?	고 등 학 생	162(85.3)	21(11.1)	7(3.7)
	대 학 생	82(68.9)	15(12.6)	12(10.1)
	근 로 청 소 년	80(81.6)	12(12.2)	4(4.1)
	비 행 청 소 년	109(83.8)	19(14.6)	2(1.5)
	계	433(80.6)	67(12.5)	25(4.7)

이상을 요약하면 靑少年들은 警察·法院과 같은 犯罪統制機關의 억압적 조치를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점에서 大衆媒體와 統制機關의 공식적 반응[21]과 매우 다른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犯罪에 관한 문제는 다른 公共政策的 이슈에 비해 뉴스의 주요 제공자인 統制機關 및 大衆媒體에의 依存度가 특히 높고, 따라서 犯罪에 대한 公衆의 태도는 이들의 관점과 준거틀 안에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犯罪에 관한 輿論이 刑事

(21) 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살인 등 소위 家庭破壞事犯에 대해 검찰은 '강력한 엄벌효과와 예방실효'를 얻기 위해 예외없이 法定最高刑을 求刑하고 있고, 法院에서도 상습적인 강도강간범에 대하여 최근 '육체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정신적 살인죄'로 판단, 死刑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매스콤에서도 '국민감정'을 근거로 엄벌주의적 입장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예컨대 1984.5.16 한국일보), 이를 통해 볼 때 강력범죄에 대한 공식적 반응은 억압적 조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政策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반대로 刑事政策과 공식적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가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統制機關과 大衆媒體의 관점이 적어도 青少年의 犯罪에 대한 태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를 참고삼아 생각한다면 같은 統制機關에 대한 青少年들의 尊敬心(respect) 내지 信賴度(reliability)가 상당히 낮다는 데에도 그 한 이유가 있는 것같다.

② '趙世衡 사건'을 통하여 본 青少年들의 法意識

犯罪와 刑罰, 그리고 法과 統制機關에 대한 青少年들의 반응을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가 두 번째 사용한 방법은 83년 4월 여론의 촛점이 된 바 있는 趙世衡사건에 대한 青少年들의 관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의 青少年들은 알고 있었고, 情報가 매우 統制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 少年院내에서도 대다수가 이를 認知하고 있었다(81.5%).

이러한 時事的인 사건을 바로 문제삼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우선 判斷의 基礎資料를 전적으로 統制機關 및 大衆媒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解釋과 意味賦與, 그리고 이들 내용을 전달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23] 이러한 점들을 方法論的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客觀性을 유지하기 어려운 危險性이 다소 존재한다. 하지만 青少年들의 태도가 公式的인 정보전달 메카니즘에 의하여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한 공식적인 반응과 青少年들의 반응이 과연 얼마나 一致하는가를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도 다수의 青少年들의 태도는 嚴罰主義的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同情心이 상당히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57.7%), "도둑질에다 탈옥마저 했으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비율(38.4%)이 찬성(37.2%)보다 약간 높고, 또 다수가 "도둑질에 대하여 無期懲役을 주는 것은 刑罰이 너무 무겁다"(57.7%, 반대는 26.8%)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罪가 무겁다 하더라도 無期懲役은 너무하다"는 견해는 자유의견란에서도 대체로 일치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를 集團별로 살펴보면 嚴罰主義的 태도는 근로 青少年의 경우에만 더 많은 支持를 받고 있으며(50.0%), 이들도 無期懲役이라는 量刑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51.0%). 非行青少年이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반대함은 물론이고, 高校生·大學生도 그보다 비율은 낮지만 반대의 입장이 우세하다. 결국 强盜强姦犯에 대한 死刑判決이나 窃盜에 대한 無期懲役宣告와 같은 공식적 統制機關의 행동은 적어도 青少年들의 支持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의견에 관한 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青少年의 대다수가 法과 法執行의 公正性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法은 萬人에 平等하다

(22) Richard Quinney, *op. cit.*, p.276; Stuart Hall et al.,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ndon: MacMillan Press, 1978), pp.68-69.

(23) S. Hall et al., *op. cit.*, pp.62-70 참조.

고 했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는 관념이 여러가지 用語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法의 不平等性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돈과 權力의 존재를 또한 지적하고 있다. "무슨 罪를 짓든 돈 있는 사람은 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돈과 權力에 짓눌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과 우리같이 工場生活을 하는 사람사이에 너무 不公平하다."

또한 대부분의 青少年들은 裁判과 判決의 公正性에 대하여도 매우 비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趙世衡의 無期懲役刑에 대하여 "判·檢事들이 윗사람의 權力에 억눌려서" 또는 "도둑질을 당한 財閥의 영향", "高位官吏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 품고 있다. 이러한 二元的 司法體系(dual system of justice)[24]에 대한 비판적

〈表 15〉 '趙世衡 事件'을 통하여 본 青少年들의 法意識

		예	아니오	모르겠다
① 선생님께서는 조세형 사건을 알고 있읍니까?	고등학생	184(96.8)	6(3.2)	
	대학생	112(94.1)	2(1.7)	5(4.2)
	근로청소년	85(86.7)	10(10.2)	3(3.1)
	비행청소년	106(81.5)	18(13.8)	6(4.6)
	계	487(90.7)	36(6.7)	14(2.6)
② 조세형이 붙잡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1. ㄱ. 도둑질에다 탈옥까지 했으니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고등학생	77(40.5)	89(46.8)	24(12.6)
	대학생	41(34.5)	41(34.5)	34(28.6)
	근로청소년	49(50.0)	26(26.5)	13(13.3)
	비행청소년	33(25.4)	50(38.5)	23(17.7)
	계	200(37.2)	206(38.4)	94(17.5)
②-2. ㄴ. 주로 부자집을 턴 조세형이 다시 잡혔다니 약간은 동정심이 간다.	고등학생	118(62.1)	59(31.1)	13(6.8)
	대학생	75(63.0)	28(23.5)	15(12.6)
	근로청소년	48(49.0)	34(34.7)	6(6.1)
	비행청소년	69(53.1)	23(17.7)	13(10.0)
	계	310(57.7)	144(26.8)	47(8.8)
②-3. ㄷ. 도둑질을 한 자에게 무기징역을 주는 것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	고등학생	123(64.7)	50(26.3)	17(8.9)
	대학생	70(58.8)	24(20.2)	34(28.6)
	근로청소년	50(51.0)	28(28.9)	10(10.2)
	비행청소년	90(69.2)	8(6.2)	8(6.2)
	계	333(62.0)	110(20.5)	69(12.8)
②-4.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4) David Gordon, "Class and Economics of Crime", in W. Chambliss(ed.), *Criminal Law in Action* (New York: Wiley, 1975), p. 37.

인식과 함께 "法이란 만인에게 公平하여야 하며 누구에 의해서도 裁判權이 制限받아서는 안된다", "法에 從事하는 분들은 진정한 法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願望이 아울러 표현되고 있음을 본다.

Ⅳ.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한국 青少年들의 法, 犯罪 및 刑罰에 대한 態度——意識을 설문지 방법과 面接調査방법을 통하여 얻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青少年集團은 高校生, 大學生, 勤勞青少年, 非行青少年 이라는 4개의 標本集團으로 나누어 처리되었고, 分析過程에서는 각 標本集團의 法意識上의 差異를 드러냄과 동시에 青少年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法意識上의 특징을 추구하려고 했다. 本調査結果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一般國民들에 비하여 青少年은 法에 대하여 直觀的이고 情緖的인 측면에서 接近하고 있으며, 否定的 印象이 肯定的 印象을 압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法이라 할 때 秩序維持, 規範遵守 내지 엄격함, 두려움 등을 聯想하는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이를 통해 青少年들이 法의 근본적인 妥當根據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대해 否定的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社會統制의 관점에서 法을 파악하는 입장이 우세한 반면, 個個人의 人權保障 혹은 權利保護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태도는 드물게 나타난다. 이는 法에 관하여 民事的, 契約的 요소보다 制裁的, 處罰的 要素를 강조하는 데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세째, 法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지만 惡法의 가능성을 역시 부인하지 않으며 法을 하늘이 내려 준 道理로 보는 傳統的 관점은 어느 정도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法遵守에 대한 근거로서 法關係者에 대한 믿음보다는 法의 사회적 기능면을 强調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法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네째, 青少年의 法에 대한 疎外感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고 法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으나 法에 대한 信賴感은 대체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신감은 다시 法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느낌과 警察, 法院 등 法執行機關에 대한 不信感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특히 法執行機關에 대한 不信感은 매우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섯째, 다수의 青少年들은 犯罪에 대한 抑壓的인(repressive) 接近方法을 반대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최근 여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類型의 犯罪 가령 强盜强姦과 같은 家庭破壞事犯, 常習窃盜 등에 대한 嚴罰主義的 조치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점에서 犯罪統制機關 및 大衆媒體들의 强力犯罪에 대한 公式的 反應(official reaction)과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 "강력한 警察, 준엄한 處罰"로 集約되는 억압적 관점에 대한 이러한 반대의 배후에는 아마도 警察, 法院 등 法執行機關의 正當性과 公正性에 대한 짙은 不信感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青少年集團의 반응일 뿐으로,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犯罪問題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實證的 검토를 要하는 문제이다.

여섯째, 각 集團별로 살펴볼 때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인 傾向은 勤勞青少年, 高校生, 大學生, 非行青少年의 順으로 법에 대하여 肯定的 反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청소년표본이 제도화된 法觀範 및 '法과 秩序(law-and-order)로 代表되는 가치에 대하여 가장 肯定的이고 順應的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注目된다. 반면 非行青少年은 法을 制裁와 刑罰에 관련시켜 聯想하고 있으며, 法의 公正性 내지 法執行機關에 대한 회의 내지 不信感이 특히 크고, 犯罪機關의 공식적 반응에 대하여도 매우 否定的 태도를 보여준다. 한편 高校生들은 肯定的 태도가 대체로 우세하나, 勤勞青少年과는 달리 柔然性(flexibility)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大學生들은 대체로 否定的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法의 本質, 機能 및 妥當性과 같은 抽象的 문제에 관하여는 非行青少年보다 더 否定的이고 批判的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硏究에서 勤勞青少年들의 法에 대한 태도는 매우 注目을 요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추상적인 法規範이 사람들의 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작용하는 기본적인 變數는 대략 社會經濟的 諸關係의 類型, 下位文化의 種類 및 개개인의 personality의 3가지를 들 수 있다.[25] 그런데 우리의 조사연구로서는 세번째 變數, 즉 조사대상자의 개개인에 관련된 變數는 밝혀낼 방법이 없는 까닭에 여기서는 勤勞青少年들이 부딪치고 있는 構造的, 文化的 壓力을 살펴봄으로써 說明을 시도해 보겠다.

다음 世代들에게 文化的 價値와 基準을 전파하는 중요한 전달벨트가, 家庭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그 家庭이 전달하는 文化的 價値가, 父母가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계층 및 사회집단의 것이라는 점은 종종 간과되어 왔다.[26] 인간발달에 있어 社會階級이 지닌 결정적인 의미는 階層的 배경이 달라짐에 따라 상이한 學習環境(learning environment)이 조성되리란 점일 것이다. 中間階層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勤勞階層의 가정적 분위기는 嚴格하고 强壓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勤勞階層의 경우 中間階層보다 성공 내지 社會的 上向移動의 可能性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勤勞階層의 父母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회내의 지배적인 習俗(mores)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道德的 命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27] 이러한 압력으로 말미암아 勤勞者階層의 適應樣式은 보다 儀禮主義型(ritualism)이 되기 쉽다.

家庭 내의 社會化와 더불어 勤勞青少年들의 法意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25) Podgórecki, *op. cit.*, p. 87-88.
(26) Robert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arged ed. (New York: Free Press, 1968), p. 212.
(27) Merton, *op. cit.*, pp. 204-205.

勤勞靑少年들이 經驗하는 작업장 내의 상황 및 그들의 文化的 經驗이다. 勤勞靑少年의 경우 작업장의 일상적 規律(discipline)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壓力에 지속적으로 부닥치게 되는 바, 이러한 압력은 勤勞靑少年으로 하여금 規範遵守的인 태도를 內面化시키게끔 하는 環境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의 勞動文化 가운데에는 감시의 느낌과 處罰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28)

이와 동시에 勤勞靑少年은 敎育機會의 制約으로 많미암아 事物을 自己觀點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보다 덜 啓發되어 있고, 그들의 社會的 可能性이 폐쇄되어 있다고 느끼는 까닭에 硬直된 관점을 취하기 쉬우며 '法과 秩序'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능력과 여유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法執行機關과의 相互作用을 통한 法體驗은 사람들의 法에 대한 意識—態度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非行靑少年들의 否定的인 法意識은 바로 이 요인에 의하여 說明될 수 있겠다. 이에 비하여 勤勞靑少年, 高校生, 大學生의 경우 상대적으로 法執行機關과 對面할 機會가 보다 적을 것이다.

이상 勤勞靑少年의 法意識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數로 가정적 배경, 작업환경과 소속집단의 下位文化, 法執行機關과의 相互作用 및 敎育水準과 社會的 移動性을 들어 假說的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變數는 4集團간의 法意識의 차이를 조명하는 데도 유효하리라 생각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각 集團의 法意識을 거칠게나마 類型化해 보면, 勤勞靑少年은 儀禮主義的—遵守的 態度(ritualistic-observant attitude), 高校生은 肯定的 態度(positive attitude), 大學生은 否定的—批判的 態度(negative-critical attitude), 그리고 非行靑少年은 否定的 態度(negative attitude)를 지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본 調査硏究를 통하여 우리는 靑少年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개별 標本集團별로 지니고 있는 法에 대한 態度上의 特色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靑少年들의 法에 대한 사고의 類型 및 性格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들을 제대로 조작,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法意識에 관련된 原因論的 脈絡을 적절히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여기서의 조사결과를 構造的, 文化的, 個人的 諸要因과 적절히 관련시키면서, 이를 法政策 내지 刑事政策的 關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28) Jock Young, "Working class Criminology," in Taylor, Walton and Young (eds.), *Critical Crimin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p. 82.